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3 선고 2022가단502959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독촉사건]

전 문

원 고 주택도시보증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

담당변호사 윤태삼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4. 12.

판 결 선 고 2022. 5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6,879,349원 및 그 중 88,299,438원에 대하여는 2021. 8. 19.부터, 86,168,954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29.부터 각 2022. 1. 10.까지는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청구원인 사실(다만, 채권자는 ‘원고’로, 채무자는 ‘피고’로 본다)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파산 및 면책신청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을 경우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소멸되는 것에 불과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연주

별지